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경찰형사법 OX 문제풀이(1)



| 최정훈 교수 | 박문각 경찰학원

- 01.**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생물학적·심리적 혼합 방법으로 판단한다. ()
- 02.**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 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03.**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주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04.**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 선고가 일단 확정된 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동일 사건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독립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
- 05.**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구하는 견해에 의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 ()
- 06.**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 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07.**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 08.**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이든 금지착오이든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점은 동일 하므로 모두 고의를 조각한다. ()
- 09.**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 10.** 한의사가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믿고 약사법에 위반되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 11.** 한약업자 면허나 의약품판매업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 12.**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상표출원을 하고 사용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
- 13.** 당국이 탐정업의 사업자 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신용조사법상 금지된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1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의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의 부존재에 관한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의 처벌만이 문제된다. ()
- 15.** 甲은 자기에게 길을 물으러 다가오는 행인을 강도로 오인하여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그 오인에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형사책임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
- 16.** 아내 甲이 밤늦게 담을 넘어 오던 남편 A를 도둑으로 착각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은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즉,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甲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 17.**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그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답 및 해설 】

[정답]					
01	02	03	04	05	06
X	X	○	X	○	○
07	08	09	10	11	12
○	○	○	○	X	X
13	14	15	16	17	
○	○	X	X	X	

01. [해설]

형사미성년자는 순수하게 생물학적 방법만 고려한다.

02. [해설]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 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03. [해설]

무죄판결이 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도 독립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9.8.24, 99도1194).

06. [해설]

대판 1992.7.28, 92도999

07. [해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판 2013.1.24. 2012도12689).

09. [해설]

대판 1995.6.30, 94도1017

10. [해설]

대판 1995.8.25, 95도717

11. [해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5.8.25, 95도717).

12. [해설]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1995.7.28, 95도702)

13. [해설]

대판 1994.8.26, 94도780

15. [해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된 사실의 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이해하여 사실인식에 착오

가 생기면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 범 문제가 되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16. [해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된 사실의 착오에 관련된 사례이다.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책임고의는 성립 후 금지착오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고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사례의 경우 상해죄로 처벌된다.

17. [해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의정보고서에 내용을 게재하거나 전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판례나 문헌을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다 하였어야 할 것이 있고, 그렇게 했더라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의정 활동에 관계있는 것이 아닌 한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하여 배부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제3자의 반론 내용을 신거나 이를 보도한 내용을 전재하는 것은 의정 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3.24. 2005도3717).